

##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홍 천 군



-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4.15. ~ 2024. 4.29.(14일간)
- 공고대상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 (이해관계자)	주소	송달불가 사유	등기번호
30머1868 (K5 하이브리드)	KNAGN41CBCA000845	전*영 (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 *** *	수취인불명	10918-3956-7518
		전*영 (이*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 **, *** ****	수취인불명	10918-3956-7517

#### 4. 공고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자는 예고기간 내 권리 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공매, 경매 등 피롱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예고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홍천군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033-430-2964)